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905

발의연월일: 2022. 3. 18.

발 의 자:김영배·김민철·김승남

김철민 · 민형배 · 박광온

유정주 • 이병훈 • 이정문

이해식 · 장경태 · 홍정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 19 등 감염병 등으로 자가 등에 격리 중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연장한 바 있음.

그러나 해당 법안이 적용된 첫 번째 선거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서 여러 혼선이 발생됨에 따라 제도보완의 목소리가 제고됨.

이에 격리자등이 투표가 가능한 시간을 실정에 맞게 오후 6시 30분 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155조제6항 및 제7항). 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5조제6항 본문 중 "6시에"를 "6시 30분에"로, "7시 30분에"를 "8시 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7시 30분"으로"를 "8시"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55條(投票時間) ① ~ ⑤ (생	第155條(投票時間) ① ~ ⑤ (현
략)	행과 같음)
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	6
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	
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	
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<u>6시에</u>	<u>6</u> 시 <u>30분에</u>
열고 오후 <u>7시 30분에</u> 닫는다.	<u>8시에</u>
다만,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	
는 고령자·장애인·임산부 등 교	
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	
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	
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	
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	
수 있다.	
⑦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	⑦
는 경우 제5항, 제176조제4항,	
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	
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	
정 중 "선거일 오후 6시"를 각	
각 "선거일 오후 <u>7시 30분"으</u>	<u>8시"로</u> -
<u>로</u> 본다.	,